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8. 28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 도로시설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박선훈, 주무관 김종현 • ☎ (044)201-3927, 3926, 3931	
보 도 일 시	2020년 8월 3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3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한다

### - 피난·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“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”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“피난·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”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도로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-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의 일환이다.
  -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·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.

터널 주요 방재시설	제트팬(단열식)	제트팬(복열식)
		

※ 통상적으로 2차선 도로터널에는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(내경 1,030mm ~ 1,530mm)을 각각 1대(복열식)으로 설치하며,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하는 경우 향후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차로(우측) 상부에 설치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“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” 개정을 통해 **피난·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**하였으며,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도로 운전자를 위한 ‘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’과 ‘사고 시 행동수칙’을 마련하고 포스터,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이번 지침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피난·대피 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시설안전과(터널) 박선훈 사무관(☎ 044-201-3926), 김중현 주무관(☎ 044-201-39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



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

# 터널 교통안전 수칙



## 터널 이용시 교통안전 수칙

전조등 ON	교통정보 확인
선글라스 벗기	주행속도 10~20% 감속
안전거리 유지	앞지르기 금지
주정차 금지	터널사고 시 진입금지

※ 터널 진입 전 통행제한속도 준수  
바는-안개 등해 의한  
악천후시 20~50% 감속 운행

※ 터널 내 비상차대  
40~50m 간격으로 설치

## 터널 안 사고 시 행동수칙

-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
-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
-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
-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
-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
- 화재진압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 외부로 대피

## 터널 안전설비 이용방법

<b>긴급전화</b> 사고 발생을 도로 관리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 전화로 250m 간격으로 설치	<b>비상벨</b>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음으로 경보하는 설비로 50m 간격으로 설치	<b>피난유도등</b>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 수 있는 유도시설로 50m 간격으로 설치
<b>차량 및 대인을 피난연결통로</b>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250m~300m 간격으로 설치	<b>옥내소화전함</b> 수동식 소화기와 구별 되어있으며 50m 간격으로 설치	<b>비상주차대</b> 고장난 차량이 도로측면에 정차할 수 있는 임시정차소로 750m 간격으로 설치

긴급신고전화 국번 없이 119 (고속국도 1588-2504)